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의원총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01.14.

개정 2025.07.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시장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.)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 7. 21.>

제2조(적용범위)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, 이 규정에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3조(간사) 시장장애인체육회는 대의원총회의 직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대의원총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 <개정 2025. 7. 21.>

제4조(의결권의 위임) ①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단체의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해당 대의원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대의원총회 개최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관계인의 의견진술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7. 21.>

제6조(제안 설명 등) 의장은 제안 안전에 대하여 간사, 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7. 21.>

제7조(회의록) ①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대의원 3인 이상, 그리고 감사의 서명·날인을 받는다. <개정 2025. 7. 21.>

② 회의록과 부의안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7. 21.>

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장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 다만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며,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한다. <신설 2025. 7. 21.>

제8조(운영일지) 간사는 대의원총회의 차수, 성원결과, 안전번호별 의결 결과 등을 별지 제 1호,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의원총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7. 21.>

부 칙 <2020. 1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5. 7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5. 7. 21.>

제 차 대의원총회 회의록

1. 구 분 : [정기 · 임시] 대의원총회

2. 회의일시 :

3. 회의장소 :

4. 참석현황

재적 : 명, 참석 : 명, 위임 : 명, 불참 : 명

5. 부의안건

의안번호	안 건 명	심의결과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
6. 진행내용

구 분	내 용	비 고

7. 서명날인

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제7조(회의록)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.

년 월 일

의장	대의원	대의원	대의원	감사
(서명)	(서명)	(서명)	(서명)	(서명)

[별지 제2호 서식]

대의원총회 운영일지

1. 구분 및 차수 : 제 차 [정기·임시] 대의원총회

2. 개최 일시 및 장소

○ 일 시 :

○ 장 소 :

3. 성원결과

○ 참석대의원 :

○ 위 임 장 :

○ 불참대의원 :

4. 부의사항

안건번호	안 건 명	의 결 결 과	비 고
제 호			
제 호			